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 1. 의결주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입원 치료’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치료보호\*’로 정비하고,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이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치료보호기관의 범위를 ‘치료를 받았던 치료보호기관’에서 ‘모든 치료보호기관’으로 확대하여 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치료보호: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15. ~ 1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입원·퇴원과 입원기간”을 각각 “치료보호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을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정신보건업무”를 각각 “정신건강증진 업무”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마약류중독자 등의 입원 통보 및 입원 신청)”을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료보호기관에 해당 중독자등의 입원을”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로, “알려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알려야”를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

한 사항을 안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로, “치료보호기관에의 입원을”을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입원 의뢰·통보 및 입원 신청”을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의 의뢰·통보 및 신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독자등의 입원 조치)”를“(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원 의뢰·통보 또는 입원 신청”을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의뢰·통보나 신청”으로,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켜야”를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독자등을 입원시키려는”을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하려는”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독자등을 입원시킨”을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한”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조치한”을 “중독자등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으로, “입원의 일시·장소 및 그 사유”를 “그 일시·장소 및 사유”로, “알려야”를 “통보해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원을”을 각각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기로”를 “치료보호하지 않기로”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을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한”으로, “부담한다”를 “부담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

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은”을 “장이”로, “입원한 사람에 대하여”를 “판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다른 판별검사를 하여야”를 “따라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해당 치료보호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마약류중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에 따른”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으로, “보고하여야 하고”를 “보고해야 하며”로, “알려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의 입원 의뢰”를 “판별검사 의뢰”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원을 의뢰한”을 “판별검사한 경우에는 해당”으로, “알려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제11조에 따른”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명하여야 한다”를 “명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도지사는 중증 마약류중독자가 2개월 이상의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마약류중독자가 제

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조치를”을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5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입원을 계속할”을 “치료보호를 계속하여 받을”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후단에 따른 총치료보호기간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 기간을 포함한다”를 “치료보호한 기간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총치료보호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입원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을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한”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입원을 의뢰

한”을 “해당”으로, “알려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퇴원 조치)”를“(치료보호의 종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한”을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으로, “퇴원 조치를 하여야”를 “치료보호를 종료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퇴원을”을 “치료보호의 종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를 종료한 때에는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사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퇴원 조치된 사람에게 퇴원한 날부터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던 그”를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또는 시·도의 치료보호 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았거나 이 영 시행 당시 치

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중독자등에 대해서는 제10조제 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가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치료보호한 기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회의록

년 월 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거소

사용·중독 마약류

심의 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심의·의결 사항

출석 위원	서명

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치료보호 의뢰·통보  
 판별검사·치료보호 신청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거소

학력	직업
----	----

사용·중독 마약류

사용 기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중독자 등의 [ ]판별  
검사 또는 [ ]치료보호를 [ ]의뢰·[ ]통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통보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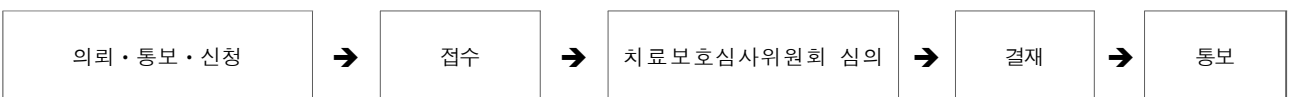
신청인

(마약류중독자 등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치료보호기관의 장 귀하

처리절차



## 판별검사·치료보호 통보(보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	--------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일시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장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사유

비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의 [ ]판별검사 또는 [ ]치료 보호의 일시·장소 및 사유를 통보(보고)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거소

사용·중독 마약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2조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를 보고(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검사 귀하

첨부서류	진단서 사본 및 소견서 사본 각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사용·중독 마약류

기존 치료보호기간

연장 필요 치료보호기간

연장 필요 사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의 치료보호기간 연장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치료 상태 보고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치료 시작 일시

치료 기간

치료 상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의 치료 상태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등) ① (생략)</p> <p>② <u>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다음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u>-----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u>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u>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 ----- ----- ----- -----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 -----.</p>
<p>제5조(각 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p>	<p>제5조(각 위원회의 기능) ① ----</p>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3. (생략)
- 4. 마약류중독자의 입원·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생략)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략)
- 2. 마약류중독자의 입원·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② (생략)
-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치료보호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

5.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 2. ----- 치료보호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

3. (현행과 같음)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① -----  
-----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  
-----  
-----.

- 1. -----



무원으로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3. (생략)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  
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  
람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  
의 제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 ⑦ (생략)

제9조(마약류중독자 등의 입원 통  
보 및 입원 신청) ① 검사는 마  
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  
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  
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  
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  
에 해당 중독자등의 입원을 의  
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치료보  
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  
야 한다.

②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  
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

----- 정신건강증진 업무-----

2. 3. (현행과 같음)

④ -----  
----- 정  
신건강증진 업무-----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① -----  
-----  
-----  
-----  
-----  
----- 치료보호기관  
의 장에게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  
----- 통보  
해야 --.

② -----  
-----

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독자등을 석방할 때에는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기관에의 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의뢰·통보 및 입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중독자등의 입원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독자등의 입원 의뢰·통보 또는 입원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켜야 한다.

-----  
-----  
-----  
----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

③ -----  
-----  
-----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  
----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

④ -----  
-----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의 의뢰·통보 및 신청-----  
----.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① -----  
-----  
-----  
-----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의뢰·통보나 신청-----  
-----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중독자등을 입원시키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독자등을 입원시킨 후에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입원의 일시·장소 및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하고,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중독자등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법

② -----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하려는 -----

----- 요청  
해야 -----.

-----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를 받게 한 -----.

③ -----  
----- 중독자등이 판  
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

----- 그 일시  
·장소 및 사유-----

----- 통보해야 -----

--- 보고해야 -----.

1. -----

정대리인이 입원을 신청한 경우: 입원을 신청한 사람

2. (생략)

④ 각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 기간에 대한 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한다.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원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판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치료보호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마약류중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설>

--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

2. (현행과 같음)

④ -----  
-----  
---- 치료보호하지 않기로 ----  
-----  
----- 치료보호기관  
에서 치료보호한 -----  
-----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① -  
----- 장이 -----  
----- 판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는 ----- 따라야 -  
----- . <단서 삭제>

1. ~ 8. (현행과 같음)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해당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판별검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입원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원을 의뢰한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치료보호명령)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마약류중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①

-----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  
-----  
-----  
-----  
----- 보고해야 하며 -----  
-----  
----- 통보해야 -----  
-----  
-----  
----- 야 -----.

② -----  
----- 판별검사 의뢰 -----  
----- 판별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  
-----  
----- 통보해야 -----  
-----.

제13조(치료보호명령) -----

-----  
-----  
----- 제11조제1항 -----  
----- 에 따라 실시한 -----

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보호 특례) ① 2개월 이상의 치료보호가 필요한 중증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마약류중독자를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조치하여 치료보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 대해서는 -----  
-----  
-----  
----- 명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후단 삭제>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보호 특례) ① 시·도지사는 중증 마약류중독자가 2개월 이상의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마약류중독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보호 기관의 병상 규모, 의료인력 및 입원할 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중증 마약류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  
-----  
-----

않다고 -----  
-----  
-----

----- 치료보호기관  
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  
----- <후단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5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①

독자가 제13조에 따른 치료보호 기간을 넘어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치료보호기간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 기간을 포함한다.

④ (생략)

제17조(치료 상태 보고) ① (생략)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입원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 사람에 대하여는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입원을 의뢰한 검사에게도 치료 상태를 알려야 한다.

-----  
----- 치료보호를 계속하  
여 받을 -----  
-----  
-----  
-----  
-----

보고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제2항 -----  
-----  
-----  
-----  
----- 치료보호한 기간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총치료보호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치료 상태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의뢰에 따  
라 치료보호한 -----  
----- 대해서는 -----  
----- 해당  
-----  
----- 통보해야 --.



제18조(퇴원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 3. (생략)
4. 검사가 퇴원을 요청한 경우  
<신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퇴원 조치된 사람에게 퇴원한 날

제18조(치료보호의 종료) ① ---  
-----  
-----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  
-----  
----- 치료보호를 종료해야 ---. <후단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4. --- 치료보호의 종료를 ---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를 종료한 때에는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  
-----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

<p>부터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던  <u>그</u>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마약  류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일부터 1년 동안 -----  -----  -----  -----  -----.</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연 락 처	(044) 202 - 3872